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27호서식을 따르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증명서는 별지 제83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은 삭제하고, 별지 제83호서식은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제외)은 2024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생략)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폐업사실 증명서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4. (생략) ③ · ④ (생략) 제28조(독촉장 등) ① 법 제29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 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u>별지 제27호서식</u> 에 따른다. ② (생략)	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2. 3.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독촉장 등) ① ----- ----- ----- ----- ----- <u>별지 제27호서식</u> 을 따르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증명서는 <u>별지 제83호서식</u> ----. ② (현행과 같음)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거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① 신청 사유	☐ 대학(원)생	대학(원)명		학번
		입학일자		휴학기간(※ 휴학 중인 경우)
	☐ 폐업	폐업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실직·퇴직	실직·퇴직일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육아휴직	휴직기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재난 선포지역 거주자(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난 사태·특별재난 선포지역		

신 청 내 용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② 고지서 납부번호		③ 의무상환액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	④ 원천공제기간(납부기한)		⑤ 의무상환액	⑥ 통지세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의무상환액 상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대학(원)생): 재학증명서 등 대학(원)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폐업자): 폐업사실증명서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실직자·퇴직자): 퇴직증명서 등 실직·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육아휴직자):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대학(원)생인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하는 사유와 관련한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4년(대학(원)생의 경우) 또는 2년(폐업자·실직자·퇴직자·육아휴직자·재난 선포지역 거주자의 경우)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며, 상환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상환유예 기간 중이라도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에 안내되는 납부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됩니다.

작성방법

1. ① 신청 사유: 신청 사유란 중 신청인에게 해당하는 사유의 ☐ 칸에 모두 ☒ 표시(예: 폐업과 퇴직 두 사유 모두에 해당되면 두 ☐ 칸에 모두 ☒ 표시)하고 해당 부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대학(원)생임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 사유란 중 대학(원)생 부분의 ☐ 칸에만 ☒ 표시를 하고 해당 부분의 내용만 적습니다.
2. ② 고지서 납부번호: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납부번호 16자리 숫자(세무서코드-연월-소득구분-발행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의무상환액: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 다만, 고지된 의무상환액 중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 해당 부분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고 적습니다.
4. ④ 원천공제기간(납부기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상환유예를 받으려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원천공제기간을, 납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적습니다.
5. ⑤ 의무상환액: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를 말합니다)를 받은 의무상환액을 적습니다. 다만,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의무상환액 중 일부를 이미 상환한 경우(이미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부분은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천공제통지 또는 납부통지를 받은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고 적습니다.
6. ⑥ 통지세무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직장) 관할세무서를, 납부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적습니다. 관할세무서는 수령하신 원천공제통지서 및 납부통지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가. 신청인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거소)			

나. 상환유예 신청 결과 : 상환유예 금액 (계) 원

사유 구분	소득 구분	귀속 연도	납부기한 (원천공제기간)	의무상환액 (통지·고지금액)	납부번호 (※ 고지인 경우)	상환유예 여부	상환유예 금액	상환유예 기간

※ 사유 구분 : ① 대학(원)생 ② 폐업 ③ 실직 또는 퇴직 ④ 육아휴직 ⑤재난 선포지역 거주자

2. 상환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상환유예 기간의 만료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상환유예 기간 중
이라도 귀하가 상환유예받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아래 계좌로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부계좌번호 :

납부가능기간 : (: ~ :)

납부방법 : 온라인·CD/ATM 계좌이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한 전자납부

끝.

발 신 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 (2022년 1월 1일 전 대출자용)

성명:

주소:

귀하께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며, 년 월 일 현재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에 해당되어 장기미상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귀하(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확인된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고지됩니다.

$$\begin{aligned} \text{의무상환액} &= [\text{소득인정액} - \text{상환기준소득인정액}] \times \text{상환율}(20\%) \\ &= \{[\text{소득} + (\text{재산-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1)}] - (\text{상환기준소득}^{2)} \times \text{배수}^{3)}\} \times \text{상환율}(20\%) \end{aligned}$$

- 1) 소득환산율: 00%
- 2) 상환기준소득: 00년 기준 00 만원
- 3) 배수: 미혼자 1.5배, 기혼자 1.8배, 부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2배

고지된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하게 되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일,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개시 전까지**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아래 상환 계좌 유효기한까지**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중지됩니다.

귀하께서 조사 제외 또는 중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원 이상이며, 아래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에게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먼저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신 의무상환액은 조사절차 중지를 위해 상환해야 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 자발적 상환 계좌 : (계좌유효기한 : 년 월 일)

납부가능시간 : (: ~ :)

납부방법 : 온라인·CD/ATM 계좌이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한 전자납부

그 밖에 재산 등 조사 및 의무상환액 결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조사관 (☎:)
에게, 장기미상환자 판정 및 자발적 상환 방법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호
지

세무서장

관인생략

장기미상환자 조사 사전 안내문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자용)

성명:

주소:

귀하께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았으며, 년 월 일 현재 졸업 후 년이 지날 때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미만(「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 제 호)에 해당되어 장기미상환자로 판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귀하(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 확인된 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귀하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아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 고지됩니다.

$$\begin{aligned}\text{의무상환액} &= [\text{소득인정액} - \text{상환기준소득인정액}] \times \text{상환율} \\ &= \{[\text{소득} + (\text{재산} - \text{부채}) \times \text{소득환산율}^1] - (\text{상환기준소득}^2 \times \text{배수}^3)\} \times \text{상환율}^4\end{aligned}$$

1) 소득환산율: 00%

2) 상환기준소득: 00년 기준 00 만원

3) 배수: 미혼자 1.5배, 기혼자 1.8배, 부부 모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받은 경우 2배

4) 상환율: 학부 대출원리금 잔액이 있는 경우 20%, 대학원 대출원리금 잔액이 있는 경우 25%, 학부 대출원리금 잔액과 대학원 대출원리금 잔액이 모두 있는 경우 25%(다만, 의무상환액이 대학원 대출원리금 잔액을 초과할 경우 20%로 적용함)

고지된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국제채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하게 되며,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일,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개시 전까지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아래 상환 계좌 유효기한까지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중지됩니다.

귀하께서 조사 제외 또는 중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은 ()원 이상이며, 아래 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귀하에게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먼저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하신 의무상환액은 조사 제외 또는 중지를 위해 상환해야 할 금액에 포함됩니다.

※ 자발적 상환 계좌 : (계좌유효기한 : 년 월 일)

납부가능시간 : (: ~ :)

납부방법 : 온라인·CD/ATM 계좌이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한 전자납부

그 밖에 재산 등 조사 및 의무상환액 결정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조사관(☎)에게, 장기미상환자 판정 및 자발적 상환 방법에 대하여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관인생략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원천공제기간			

통 지 내 용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원천공제의무자	
소득구분	의무상환액	원천공제금액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근로소득	원	(매월 원)		
사업소득	원	(매월 원)		
연금소득	원	(매월 원)		
합 계	원	(매월 원)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의무상환액	② 년 자발적 상환액	의무상환액 = Min[(①-②), 통지한도액*]
	* 통지한도액 = 대출잔액 - 통지·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		

1. 귀하는 년에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소득의 변동에 연계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고용주인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분의 급여 등을 지급할 때에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며,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에 2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3. 귀하는 원천공제의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과 귀하가 원천공제금액의 전부를 미리 납부하거나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귀하가까지 아래의 계좌번호로 원천공제금액을 전부 납부하거나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금액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미리 납부할 경우	① 전액납부 시	(원)	납부할	
납부할 금액	② 분할납부 시(1·2회차)	(원)	계좌번호	
납부가능시간 : (: ~ :)				
납부방법 : 온라인·CD/ATM 계좌이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한 전자납부				

- ※ 귀하가 1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했으나까지 2회차 분할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공제금액의 2분의 1을 원천공제의무자에게 통지합니다.
4. 채무자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동되는 경우(퇴직 포함)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 퇴직 없이 원천공제의무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5. 퇴직 등으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원천공제의무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 미납한 의무상환액은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6. 해당 원천공제기간 종료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미달 납부한 의무상환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미리 납부할 경우 납부할 금액	납부할 계좌번호
전액 납부 시 (원)	
분할 납부 시(1회차·2회차) (원)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또는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원 천 공 제 통 지 서(갑)				
(원천공제 의무자용)				
원 천	법인명(상호)		대 표 자	
공 제	사업장 소재지			
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원천공제기간				
통 지 내 용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연금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합 계	원(매월 원)		
1. 해당 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원천공제 의무자"라 함)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채무자의 근로소득 등의 변동에 연계한 의무상환액을 매월 공제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및 월별 원천공제 금액 등은 2쪽 참고)				
신고방법 : 상환금명세서 서면신고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방법 : 아래 계좌번호로 납부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한 전자납부 납부할 계좌번호 : 납부가능시간 : (: ~ :)				
2. 또한, 채무자에게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퇴직소득의 20%(단,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공제)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채무자의 의무상환액이 변동되거나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통지될 수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공제한 의무상환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공제 상환금명세서는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할 금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퇴직 없이 원천공제 의무자가 변동되는 경우(인사이동, 법인의 인수·합병·분할, 사업의 양도·상속 등)에는 변경된 원천공제 의무자가 채무자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원천공제 의무자가 원천공제하지 않거나 원천공제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부할 계좌번호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또는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천 공 제 통 지 서(을)
(원천공제 의무자용)

일련 번호	소득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연 간 의무상환액 (a)	기납부된 의 무 상환액 (b)	원천공제기간 잔여 월수 (c)	매 월 원천공제할 금 액 (a-b)/c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원 천 공 제 (변경 · 추가) 통 지 서(갑)				
(원천공제 의무자용)				
원 천 공 제 의무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원천공제기간				
통 지 내 용				
당초 통지한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연금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합 계	원(매월 원)		
변경 후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연금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매월 원)		
	합 계	원(매월 원)		
신고방법 : 상환금명세서 서면신고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방법 : 아래 계좌번호로 납부 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를 통한 전자납부 납부할 계좌번호 : 납부가능시간 : (: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납부할 계좌번호
세 무 서 장 직인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천 공 제 (변경 · 추가) 통 지 서(을)
(원천공제의무자용)

일련 번호	소득 구분	성명	생년 월일	당초 통지				변경 · 추가 통지				비고
				연간 의무 상 환액 (a)	기납부된 의무 상환 액 (b)	원천공제 기간 잔 여월수 (c)	매월 원 천공제 할 금액 (a-b)/c	연간 의무 상환액 (a)	기납부된 의무 상환 액 (b)	원천공제 기간 잔 여월수 (c)	매월 원천공제 할 금액 (a-b)/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 <삭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통 지 내 용 (단위: 원)					
소득구분	의무상환액 (a)	납부합계액 (b=c+d)	원천공제한 금액(c)	본인이 납부한 금액(d)	납부할 의무상환액 (e=a-b)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합 계					
납부기한	년 월 일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의무상환액	② 년 자발적 상환액	의무상환액 = Min[(①-②), 통지한도액*]		
	* 통지한도액 = 대출잔액 - 통지·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				

- 1.귀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이 발생했으나 고용주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용주인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어 의무상환액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계좌번호 :

납부가능시간 : (: ~ :)
3.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직 등으로 직장이 변경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원천공제 의무자에게 의무상환액 중 이미 상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납부할 계좌번호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또는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가 누락된 채무자용)			
채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원천공제 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의무상환액 상세 내용 (단위: 원)			
상환구분	급여 등 지급 연월	원천공제 대상 금액	원천공제 누락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합계			
납부기한	년 월 일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의무자가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나 원천공제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천공제 누락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납부할 계좌번호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사실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체납내역 (단위: 원)	소득구분	귀속년도	납부기한	총체납금액	의무상환액	연체(가산)금	체납 발생 경과 일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세무서장 직인
담당자		
연락처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268